

제정 2013. 9. 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칙 제34조의3 및 교육과정운영및이수지침 제27조에 의거한 산학협력친화형 교육과정(이하 "트랙 교육과정" 이라 한다.)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트랙 교육과정이라 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과정 편성) ① 트랙 교육과정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(이하 "전공" 이라 한다.) 이 참여하여 전공별로 특화된 교과목을 지정하고 이를 융합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특수분야는 단일전공 내에서 지정하여 편성할 수도 있다.

② 각 전공은 편성학점 중 15학점 내외로 트랙 교과목을 지정한다.

③ 3학년 또는 4학년 편성 교과목에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1학년 또는 2학년 편성 교과목도 지정할 수 있다.

④ 트랙으로 편성된 교과목은 교육과정 비교란에 "트랙" 으로 표기한다.

제4조(교육과정 운영) ① 트랙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참여 전공은 주관 전공을 지정하고 주관전공주임교수가 책임교수가 된다.

② 전공별 개설학점 범위 내에서 개설하며, 트랙 교과목은 학기당 전공별 최소 3학점 이상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트랙 교과목의 분반 및 폐강기준 등 수업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[대구대학교 수업시간표 편성, 수강신청 및 수업운영에 관한 지침]에 따른다.

제5조(이수대상 및 이수방법) ① 트랙 교육과정의 이수는 트랙 참여 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거나 부·복수(연계)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별도의 신청절차 및 선발인원의 제한은 없으며, 트랙 참여 전공에서 개설한 "트랙" 명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교육과정 이수학점을 충족한 경우 트랙 이수자로 인정한다.

제6조(이수기준) ① 트랙별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되, 전공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전공별 이수학점을 미충족할 경우 트랙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.

③ 교육과정에 "트랙" 으로 지정된 교과목에 한해서만 인정한다.

④ 트랙 교과목과 동일명칭 교과목을 트랙 참여 전공이 아닌 타 전공 개설과목으로 이수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트랙 이수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⑤ 트랙 교육과정이 편성된 학년도에 이수한 교과목부터 인정한다.

제7조(이수증명) 트랙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 수여 시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한 총장 명의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